

	2021학년도 가정통신문 <b>수도권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관련          학사운영 안내</b>	전	교무실	031-821-3236
		화	행정실	031-821-3235
주 소	우) 1208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68번길 47 (http://www.cheonghak.hs.kr)			

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  
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학사 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 
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마스크 쓰기의 생활화로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 
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학사운영 안내

구분	내용
거리두기 단계	4단계
적용대상	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평생교육시설, 각종학교
학사운영 기준	<b>전면 원격수업 전환 원칙</b>
적용기준	<b>2021. 7. 12. (월)~7. 25. (일)</b>
기타 사항	고3백신 접종 관련 사전교육, 1학기 2차 지필평가 미완료교, 성적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학년·반을 구분하는 등 밀집도를 최소화(시간과 동선 분리)하여 제한적 등교 가능

※ 1학년 등교일 : 2021. 7. 13(화)-2차 지필평가 및 학기말 성적 확인을 위해 학급별 시차 제한적 등교함.

■ 원격수업 학생 유의사항

- 원격수업 기간에도 교육부 앱을 이용하여 매일 [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]을 실시해야 함.
- 원격수업은 원칙적으로 당일 학급 시간표대로 운영하며, 조례(08:50~09:00)와 종례(16:50~17:00)에 참여해야 함.
- 원격수업 시 **웹캠과 마이크를 반드시 연결하여 학생 본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출결 인정됨**
- 출결 확인 방법

▶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(학급별 개인별 시간표대로)  
 ▶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**접속 불량** 등으로 수업참여가 어려운 경우 학생은 **상황 발생 즉시 교과 교사**와 전화, 문자, 채팅 등으로 알리고 당일 원격수업 미실시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함.  
 ▶ 접속 불량 등으로 당일 부여된 대체학습은 수업일 기준 3일 내로 대체학습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 됨.  
 ▶ 기타 사유로 결석이나 결과 사유 발생 시 결석신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

■ 2학기 지필평가 일정 변경 안내

1. 2학기 지필평가 일정

학기 구분	평가구분	1, 2학년	3학년
2학기	1차 지필평가	2021. 10. 14.(목) ~ 10. 19.(화)	
	2차 지필평가	2021. 12. 15.(수) ~ 21.(화)	2021. 11. 23.(화) ~ 26.(금)

- 재량휴업일 : 2021. 9. 23.(목)~24.(금), 2021. 11. 18.(목) 대학수학능력시험
- 동계방학 : 2022. 1. 7.(금)~2. 4.(금)

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

- 코로나 19 관련 심각·경계 단계에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한시적으로 '가정학습'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.
-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.
- 지필평가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함.

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(참고)

« 학교 밀집도 원칙 »

변경 전 : 거리두기 5단계 체제 ('20.11.~, '21.6.2. 일부수정)					
단계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인원 기준	수도권 100 ↓ 타권역 30 ↓	수도권 100 ↑ 타권역 30 ↑	전국 300명 ↑	전국 4~500명 ↑	전국 800~1000명 ↑
밀집도 기준	밀집도 2/3~ 전면등교	밀집도 2/3 준수	밀집도 2/3 원칙, 1/3 가능	밀집도 1/3 준수	전면 원격수업
기타 사항	2단계까지 유치원·초등 1·2학년 밀집도 제외가능				
	2.5단계까지 소규모·농산어촌학교, 특수학교(급) 등교 자율 결정				
	돌봄,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,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				
↓↓					
변경 후 : 거리두기 4단계 체제					
단계	1단계 [기존 ~2단계]	2단계 [기존 2.5단계]	3단계 [기존 3단계]	4단계 [신설 단계]	
인원 기준	전국 500명 미만 (경기) 132명 ↓	전국 500명 이상 (경기) 132명 ↑	전국 1,000명 이상 (경기) 265명 ↑	전국 2,000명 이상 (경기) 530명 ↑	
밀집도 기준	전면 등교	전면 등교	(고) 2/3	원격수업 전환	
기타 사항	돌봄,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,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(급)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:1 또는 1:2 대면교육 가능				
※ 소규모학교: 1학과와 같이 300명 이하+301명~40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평균 25명 이하 농산어촌학교: 「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에 따른 학교 ※ 단계 조정기준 총족 시, 지자체(교육청 포함)·중앙정부 간 사전협의 거쳐 단계조정					

2021. 7. 09.

청 학교 등 학교 장